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2006. 3. .

: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인근 주민 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분쟁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 제36조, 제37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 소속 공무원중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국장

제3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용의 부담)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분쟁의 조정)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부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